

	<h2 style="margin: 0;">취미동아리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4-7
			제정일자	2007.07.12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취미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요건) 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개학과이상 20명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립목적이 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동아리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제3조(등록절차) 동아리로 신규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4월말까지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신청서
2. 동아리 지도교수 승낙서
3. 동아리 회원명부
4. 동아리 활동계획서
5. 동아리 회칙

제4조(등록심의 및 승인) 등록신청 동아리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제5조(동아리지원) 학교에서 승인된 동아리는 동아리실을 배정받고 비품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6조(동아리평가) 동아리의 건전한 활동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의 기준을 통하여 동아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동아리를 선정, 시상하도록 한다.

1. 동아리 활동실적
2. 동아리실 관리실태
3. 동아리 규정준수
4. 지도교수 참여도

제7조(동아리 취소) 다음에 해당되는 동아리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등록기간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동아리
2. 학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동아리
3. 1년간 동아리 활동이 전무한 동아리

제8조(동아리연합회) 동아리의 공통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하며

동아리 회장단에서 동아리 연합회장을 선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